

의안  
번호

58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 2026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04. 16.  
전문위원 김동성

## 1. 제안이유

-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 세입예산안(총괄)

〈안전생활국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	비 고
계	18,527,856	16,791,558	1,736,298	10.34	
도 시 안 전 과	933,286	822,246	111,040	13.50	
청 소 행 정 과	11,308,188	11,199,388	108,800	0.97	
일 자리 정 책 과	5,662,719	4,487,377	1,175,342	26.19	
지 역 경 제 과	415,727	149,956	265,771	177.23	
환 경 과	207,936	132,591	75,345	56.83	

-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629만원이 증가한 185억 2,785만원이며, 세입 증가율은 일반회계 10.34%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대비 증감률〉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일반회계 총예산	1,124,237,528	1,116,679,082	7,558,446	0.68	
안전생활국 예산	18,527,856	16,791,558	1,736,298	10.34	
※ 비 중 ( % )	1.64	1.50	22.9		

- 금번 추경 편성된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1.64%, 세입 추가 증가율 대비 22.9%에 해당함.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

〈조정교부금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계	168,900	0	168,900		
도 시 안 전 과	100,000	0	100,000	100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해빙기대비안전취약시설 긴급 보수·보강지원
청 소 행 정 과	68,900	0	68,900	100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환경공무원 한파대비 근무환경비선 1,890만원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지원 5,000만원
일 자 리 정 책 과	-	-	-	-	
지 역 경 제 과	-	-	-	-	
환 경 과	-	-	-	-	

- 조정교부금등은 해빙기대비 안전취약시설 긴급 보수·보강 지원 및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 지원 등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6,890만원이 추가 편성됨.

**<국·시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계	6,708,702	5,141,304	1,567,398		
도 시 안 전 과	828,286	817,246	11,040	1.36	시비보조금
청 소 행 정 과	95,900	56,000	39,900	71.2	시비보조금
일 자 리 정 책 과	5,308,460	4,133,118	1,175,342	28.4	국: 4억 9,342만원 사: 6억 8,192만원
지 역 경 제 과	400,711	134,940	265,771	196.9	국: 4억 9,342만원 사: 6억 8,192만원
환 경 과	75,345	0	75,345	100	국: 5,474만원 사: 2,060만원

- 보조금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480만원이 감액된 반면, 안전보안관 운영(1,104만원),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3,990만원), 청년도전지원 사업(4억 6,192만원),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4억 3,828만원) 등 12개 사업에 15억 6,259만원이 성립전예산 등으로 지원 및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5억 6,73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안전생활국 세입 추가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 세출예산안(총괄)

###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계	99,988,053	97,834,819	2,153,234	2.20	
도 시 안 전 과	9,500,350	9,389,310	111,040	1.18	
청 소 행 정 과	65,962,338	65,853,538	108,800	0.17	
일 자리 정 책 과	11,615,129	10,117,366	1,497,763	14.80	
지 역 경 제 과	12,084,025	11,723,739	360,286	3.07	
환 경 과	826,211	750,866	75,345	10.03	

- 2026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999억 8,8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인 21억 5,323만원이 증액됨.

###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대비 증감률〉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일반회계 총예산	1,124,237,528	1,116,679,082	7,558,446	0.68	
안전생활국 예산	99,988,053	97,834,819	2,153,234	2.20	
※ 비 중 ( % )	8.89	8.76	28.4		

- 금번 추경 편성된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8.89%, 세출 추가 증가율 대비 28.4%에 해당함.

## □ 부서별 세출예산안

### 1) 도시안전과

-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8%인 1억 1,1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긴급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자치구조정교부금 1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되고, 안전보안관 간담회비 및 활동운영비에 시비보조금 1,104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됨.

#### 〈도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	비고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긴급 보수·보강지원	100,000	0	100,000	100	<성립전 예산><추가편성> <시비보조금 교부>
안전보안관 간담회비	2,400	0	2,400		<성립전 예산><추가편성> <시비보조금 교부>
안전보안관 활동운영비	8,640	0	8,640	100	<추가편성> <시비보조금 교부>

### 2) 청소행정과

-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7%인 1억 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깨끗한 성북 가꾸기 홍보물 제작비, 환경공무원 한파 대비 방한용품 및 재활용 정거장 구매비, 리엔업사이클플라자 운영 관련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비 등에 총 6,89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소 및 명절 격려금 등에 시비보조금 3,99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됨.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깨끗한 성북 가구기 홍보물 제작비	10,000	0	10,000	100	<성립전 예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공무원) 휴양소, 안전교육	15,100	0	15,100	100	<성립전 예산> <시비보조금 교부>
(공무원) 방한용품	18,900	0	18,900	100	<성립전 예산> <자치구특별조정교부>
(공무원) 명절 격려금	12,600	0	12,600	100	<성립전 예산> <시비보조금 교부>
(공무원) 선진견학 및 문화탐방	12,200	0	12,200	100	<성립전 예산> <시비보조금 교부>
재활용 정거장 구매	5,000	0	5,000	100	<성립전 예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자원순환관련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등	18,000	0	18,000	100	<성립전 예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자원순환데이 상점운영 관련 물품 구매 등	17,000	0	17,000	100	<성립전 예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3)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8%인 14억 9,7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동행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1억 6,814만원이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북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과 청년도전 지원사업비 5억 5,742만원을 국고보조금 및 구비를 반영하여 성립전 예산 등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정 및 사업비 교부에 따라 시·구비를 반영한 7억 6,684만원이 성립전 예산 등으로 추가 편성됨.

〈일자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고	
					%
동행일자리 사업 인건비	5,241,812	5,092,287	149,525	2.93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시비 1억 466만원 구비 4,485만원 <매칭 비율 : 시 70 : 구 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362,300	343,680	18,620	5.41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시비 1,396만원 구비 465만원 <매칭 비율 : 시 75 : 구 25>
성북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92,500	361,000	31,500	8.72	<국비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편성>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804,698	32,500	772,198	2,375	<성립전 예산 등> <자치구사업 승인예산 통보에 따라 시·구비 추가편성> 시비 5억 6,328만원 구비 2억 890만원 <매칭 비율 : 시 70 : 구 30>
청년도전지원 사업 운영	525,920	0	525,920	100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구비 추가편성> 시비 4억 6,192만원 구비 6,400만원

#### 4)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7%인 3억 6,0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2억 2,43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육성지원 및 설 명절 이벤트 사업에 5,648만원이 성립전 예산 등으로 추가 편성되는 한편, 전통시장 매니저 구비 인건비 1,529만원은 감액 조정되었음. 아울러 2026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시·구비를 반영하여 8,750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가내시 변경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800만원이 감액 편성됨.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888	0	3,888	100	<서울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국·시·구비 추가편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20,417	0	220,417	100	<서울시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추가편성>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127,552	79,071	48,481	61.3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 및 기편성된 구비 1,529만원 감액 조정>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	8,000	0	8,000	100	<성립전 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
2026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87,500	0	87,500	100	<사업추진 따른 구·시비 추가편성>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04,000	112,000	△8,000	△7.14	<가내시 변경에 따른 국·시·구비 감액 조정>

5) 환경과

- 환경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3%인 7,5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 석면 피해구제급여 및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에 따른 인건비, 고용보험 등에 7,534만원이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됨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	
				%	
석면피해구제급여	44,476	10,331	34,145	330.5	<성립전 예산> <국비보조금(기금)교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41,200	0	41,200	100	<5건의 성립전 예산> <인건비, 피복비, 핸드폰 수리비 등 국·시비보조금 교부>

### 3. 검토결과

-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을 검토한 결과,
  -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지원 등 성립전 예산 그리고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